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홍은제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4년 10월 3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김**	조** 1956-03-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10길	재등록
김**	김** 1960-02-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10길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담당자 : 이종순 문의전화 : 02-330-8129)

2024년 10월 24일

홍은제1동장

